

# 상병수당과 질병휴가 · 휴직의 제도화를 위한 제언

이 병 희\*

방안의 코끼리(elephant in the room)라는 영어 표현이 있다. 눈에 밝히 보이지만 깔끄러우니 사람들이 외면하는 문제를 뜻한다. 코로나19 재난은 우리가 애써 못 본 채 해온 문제들을 드러냈다. 우리가 언택트의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데에는 문 앞까지 물품들을 배달하는 택배 노동자, 집단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콜센터 · 물류센터 노동자 등 위험을 무릅쓰고 컨택트 노동을 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있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는 노동법과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물류센터와 콜센터의 집단 감염사태는 실 권리에 대한 법적인 보장과 그 기간 동안의 소득보장이 없다면 '아프면 쉬라'는 방역 수칙이 지켜질 수 없는 현실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나라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유급병가와 사회보험에서 지원하는 상병수당으로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병가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상병수당이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안정된 일자리 종사자(공무원이나 대기업 · 공공부문)가 단체협약 · 취업규칙으로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 올해 도입되어 코로나 위기 동안 활용도가 크게 늘어난 가족돌봄 휴직 · 휴가제도는 가족이 아플 때 사용이 가능하지만, 본인이 아플 때에는 근로시간 단축만이 가능할 뿐이다. 본인이 아프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쉬거나 치료받을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프리랜서 등은 연차휴가가 없다.

코로나19 위기 동안 고용보험 확대와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요구가 분출했다.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에 이어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형 상병수당의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상병수당 제도화 논의에서 다음의 검토를 제안한다.

첫째,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아프면 쉬 수 있는 권리의 보장이 필수적이다. 질병휴가 · 휴직의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면, 취약계층은 상병수당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하면 아파도 쉬 수 없고, 재계약시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제도의 우선적인 적용대상이라면, 유 · 무급을 둘러싼 논의보다 질병휴가 · 휴직 권리를 보장하고, 병가기간 중에 해고를 제한하며, 복귀했

\*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lbh@kli.re.kr).

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들이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상병수당은 아파서 일을 할 수 없는 동안 발생하는 소득의 손실을 사회보험을 통하여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법적인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 상병수당의 제도화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병수당과 질병휴가·휴직 권리를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간 관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임승지(2020)에 따르면, 1주일의 유급병가휴가를 신선헌할 경우 사업주에게 3천억 원 이상의 부담이 발생한다. 무급 질병휴가·휴직제도로 도입되더라도 무급휴직 동안 대체인력을 활용할 경우 사업주 부담이 발생한다.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코로나19 위기 동안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을 통해 지원한 경험을 고려하면, 취약계층에게는 병가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공무원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유급병가를 받고 있는 집단에 대한 상병수당의 중복 지급은 곤란하다. ILO의 제130호 의료보호 및 상병급여협약(1969년)을 기초로 하되, 기업의 병가 운영 실태를 고려하여 현실적인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셋째, 상병수당은 일하는 사람의 상병에 대응한 소득보장제도이므로, 질병·부상에 대한 의료적 인증뿐만 아니라 소득활동 증명, 사업주의 병가 인증이 동반되어야 한다(임승지, 2020). 임금노동자를 넘어 일정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는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 논의는 보편적 상병수당의 운영에 필요한 자격 확인과 인증 심사 등 행정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상병수당과 질병휴가·휴직 제도의 도입은 감염병 위기의 예방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아파도 일하는 문화(presenteeism)가 초래한 비효율을 억제하고 일-생활 균형을 보편적으로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기대한다. **KLI**

### [참고문헌]

임승지(2020), 「상병수당제도 도입연구 I: 기초연구」,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 휴가 도입을 위한 토론회 발표문, 2020. 7. 2.